

의안번호	2205082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4.11.5.
추 계 번호	23B35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8.4	8.4	8.4	8.4	8.4	42	8.4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3항)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해근로자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76조의4 (명단 공개)(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등을 공개할 수 있음. 다만,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재량·의무 규정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76조의5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주는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주가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제3항)	—	• 미대상 －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해근로자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가 각각 지정한 참고인이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사용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안 제76조의4(명단 공개)(제1항)	—	• 미대상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공식추계 - 개정안은 명단 공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유사 사례를 토대로 산출 - 본문 참조
3	안 제76조의5(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주가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공인노무사의 지원 건수와 이에 대한 지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1)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명단 공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개정안은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래에 설치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서는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2024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는 총 16개가 있으며, 이 중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본 추계서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
 - (인적 구성) 유사사례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7명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비)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표 2]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7	7	7	7	7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8.4	8.4	8.4	8.4	8.4	42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추계) 추계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40만원, 2030년 84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장래에 발생할 “직장내괴롭힘정보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회의개최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